



2021.08.24

국회예산정책처 |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Understanding Bill Cost Estimation and Case Studies 2021 I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법안 비용추계 이해)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총괄 |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
임준기 행정비용추계과장
윤상열 前행정비용추계과장

작성 | 장만수 前추계세제분석관
안종덕 추계세제분석관
장삼열 추계세제분석관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이우영 추계세제분석관보

지원 | 강신영 행정실무원
김지양 자료분석지원요원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 심의위원회」의 심의(2021.08.1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02) 6788-3778 | ac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국회예산정책처는 제·개정되는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점검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처음 시작한 2004년에는 비용추계 건수가 5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담 기관이 된 이후, 2014년에 557건이던 법안 비용추계 건수는 2015년에 1,994건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645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기법을 정교화하고 의무지출 모형을 개선하여 추계의 합리성과 법안과의 정합성도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법안 비용추계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는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인 [법안 비용추계 이해]는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요구절차, 관련 법령 등 법안 비용추계 제도 전반을 소개하였고, 법안 비용추계에 대하여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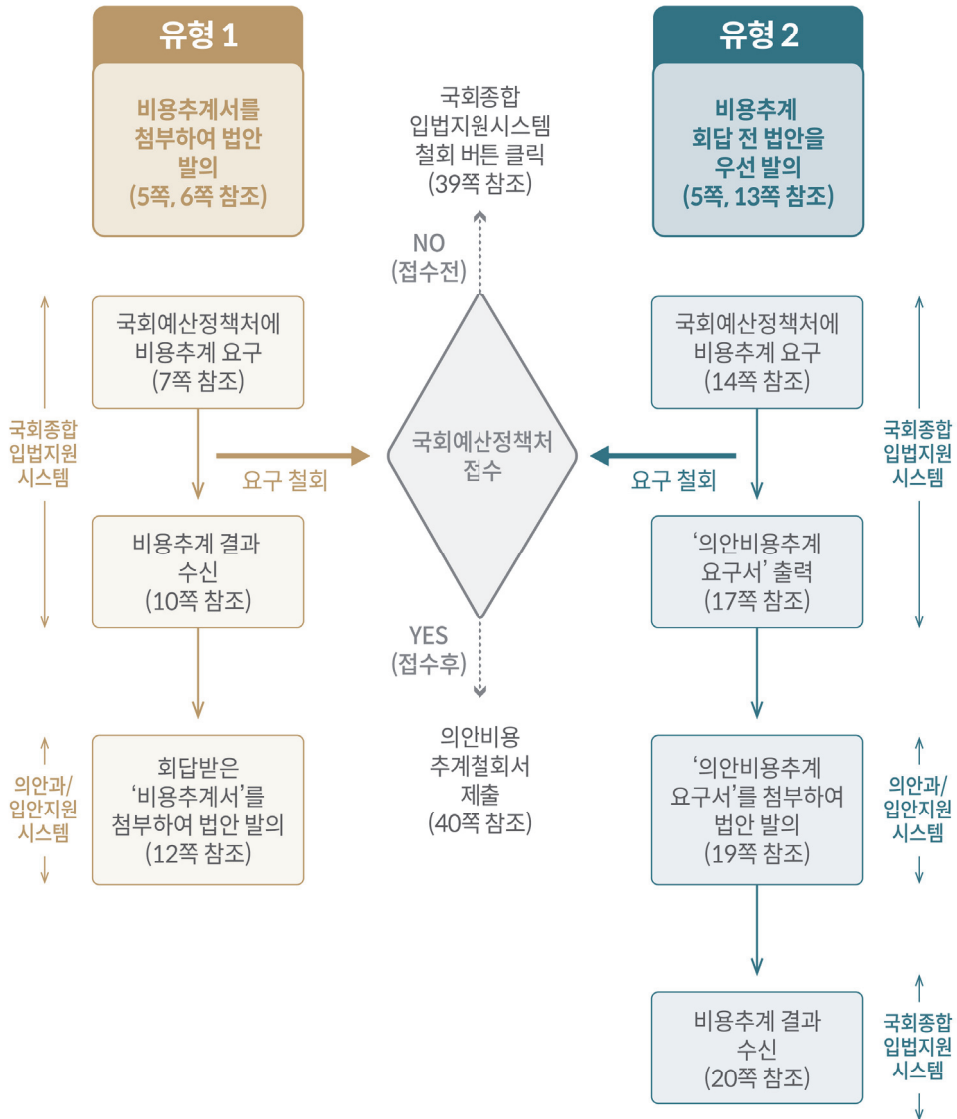
2권인 [법안 비용추계 사례]는 제21대 국회(2020.5.30. ~ 2021.3.31.)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을 성안하는데 있어 도움자료로써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익 상

비용추계 안내 바로가기



국회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제출 변경 안내

1 비용추계 관련 발의 절차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前)	개정 후(後)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 발의	1.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전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 2. 회답받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	좌동 (개정 전후 변경 없음)
비용추계서 회답 전 법안 발의	1. 국회의원은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 2. 비용추계 요구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 3. 추후 회답받은 비용추계서를 의안과에 제출	1. 좌동 2. 좌동 3. <u>국회예산정책처는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의장 및 요구한 의원에게 회답</u> ※ 이 경우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국회법」 제79조의2 개정 내용

제79조의2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021.10.28. 시행

차례

1. 법안 비용추계 개관	1
-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1
- 법안 비용추계의 목적	2
- 법안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3
- 관련 법령	4
2. ‘비용추계’ 관련 법안 발의 유형 2가지	5
- [유형 1] 비용추계서와 함께 법안 발의 시 상세 절차	6
① 법안 비용추계 요구	7
② 법안 비용추계 결과 수신	10
③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	12
- [유형 2] 비용추계 회답 전 법안 발의 시 상세 절차	13
① 법안 비용추계 요구	14
②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출력	17
③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	19
④ 법안 비용추계 결과 수신	20
3. 비용추계 유형별 분류	22
4. 법안 비용추계 통계	23

부록: 자주 묻는 질문 FAQ / 27

Q1. 법안 비용추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9
Q2. 모든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30
Q3.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만 할 수 있나요?	31
Q4. 법안 비용추계제도는 국회에만 있는 건가요?	32
Q5.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비용추계서 등을 회답받기 전에 법안을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3
Q6.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를 첨부하여 법안을 먼저 발의한 경우 추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를 의안과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34
Q7. 위원회의 수정안, 위원회안 또는 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가 필요한가요?	35
Q8. 비용추계를 회답받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나요?	36
Q9. 미첨부사유서와 미대상사유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7
Q10. 의뢰한 법안 비용추계를 사정상 철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8
Q11. 법안 비용추계의 추계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42
Q12.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비용추계서 내용이 반영되나요?	43
Q13.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는 어디서 참고할 수 있나요?	44
Q14. 법안 비용추계는 법안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도 고려하나요?	45
Q15. 법안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분석관은 몇 명인가요?	46
Q16. 비용추계를 요구했는데 담당 분석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47

참고자료: 비용추계 관련 법령 /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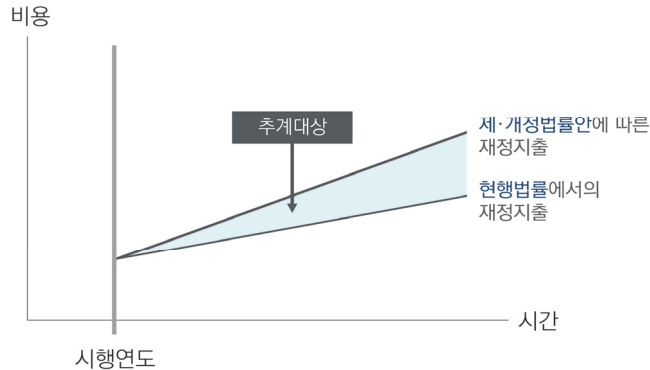
- 국회법	53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54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5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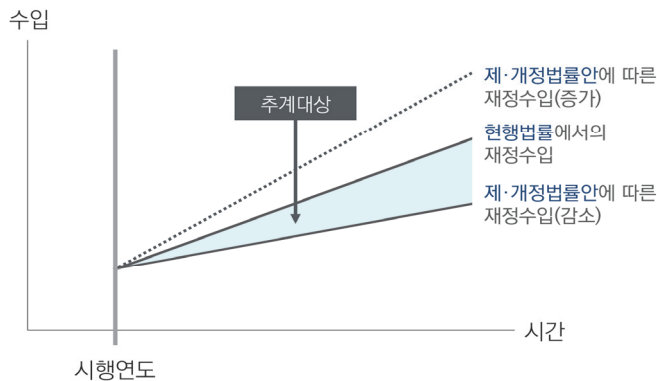
법안 비용추계 개관

■ 법안 비용추계¹⁾의 개념

-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²⁾의 순증가액³⁾에 대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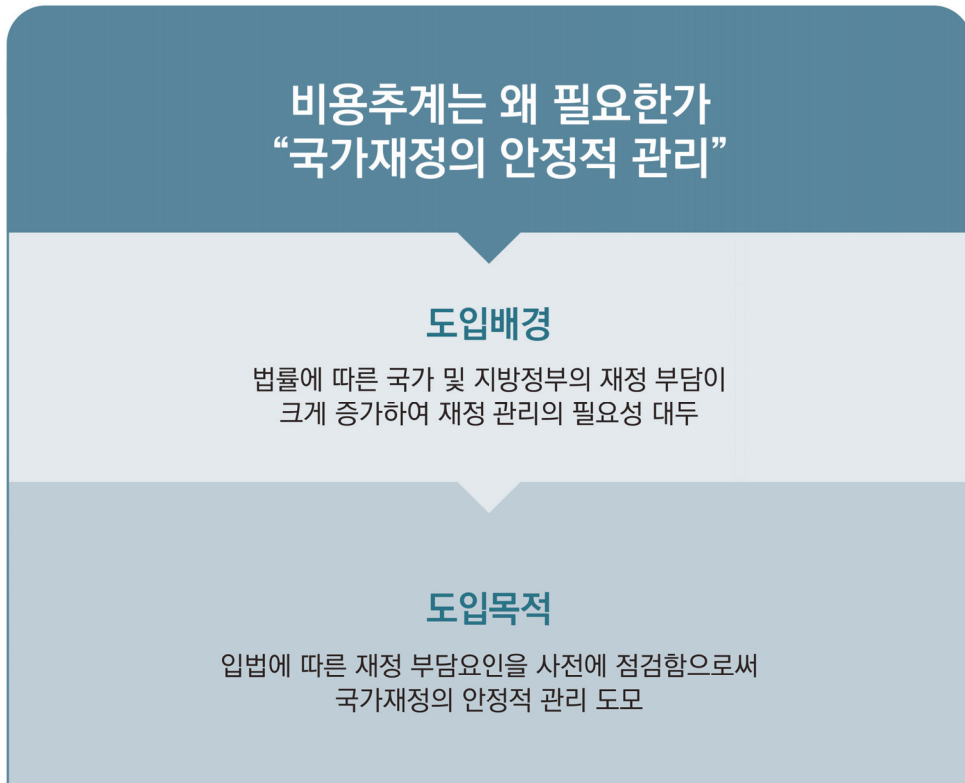
-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수입의 순증감액³⁾에 대한 추계



- 1) 의안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의미(국회 의안편람)하고, 「국회법」제79조의2는 비용추계의 대상을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안이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의안 비용추계’를 ‘법안 비용추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지출로 공공기관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재정수입의 범위 또한 같음
-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대한 추계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율 변화 및 공제감면 변경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는 법안의 경우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감소’ 외에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음

■ 법안 비용추계의 목적

-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



■ 법안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연 도	내 용
1973.02.07.	「국회법」 개정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한 예산명세서 제도 도입
2005.07.28.	「국회법」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범위에 ‘예산’ 외 ‘기금’ 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도 포함
2015.03.19.	「국회법」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의 작성주체를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 ⁴⁾
2021.07.27. (2021.10.28. 시행)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의원에게 제출 ⁵⁾ ※ 이 경우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국가재정법」 제정(2006.10.04.)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재정수반 법안에 대해 추계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2011.07.1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함

- 4) 이전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원실에서 자체 작성한 비용추계서의 제출도 가능하였음
- 5)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

법률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

-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 요구서 제출 의무화
-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위원회안 또는 대안)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가능)
- 위원회에서 수정된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심사보고서에 첨부(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가능)

국회 규칙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작성, 추계방법 등 규정

국회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추계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유형 1] 비용추계서와 함께 법안 발의

-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
-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⁶⁾

[유형 2] 비용추계 회답 전 법안 발의

- 국회의원인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법안을 우선 발의하려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요구
-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출력⁷⁾
-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
-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 접수
 -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및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하며 이 경우 국회의원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6)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본관 701호, 내선 2359)

7)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출력 방법: 17쪽 참조

[유형 1] 비용추계서와 함께 법안 발의 시 상세 절차



8)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국회의원이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요구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용방법: 7쪽 참조)

9)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대상사유서'로 구분하며 상세한 설명은 22쪽 참조

① 법안 비용추계 요구

- 국회의원은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할 수 있음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 1) 내부망 컴퓨터에서 <https://nals.assembly.go.kr> 접속
- 2)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¹⁰⁾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은 국회의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법정보서비스 기관

- 국회사무처 법제실
- 국회도서관
- 입법관련기관(부서 아이디/비밀번호 사용)에서도 사용 가능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저장
[개인 식별번호 찾기]

로그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COPYRIGHT© 대한민국국회. ALL RIGHT RESERVED.

10)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의: 국회사무처 디지털정책담당관실(내선 3882)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비용추계 요구 절차〉

① [의안비용추계요구] 클릭

②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클릭

의안비용추계요구

종자료요구 0건

접수 0건

진행중 0건

답변완료 0건

기타 0건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의안비용추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요구일	2020-05-04	요구위원회/의원	
소속		보좌직원	선택
메일 *		전화 *	
FAX		휴대전화 *	
		요구유형	온라인
소관위원회 *	선택하세요	회답방법 *	온라인(메일)
의안명 *	☐ 내용 복사		
제안취지 *			
의안원문	찾아보기...		
특기사항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 : 필수입력 항목

⑥

저장

목록

③ “의안명” 기입(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④ 제·개정안 “제안취지” 작성



⑤ 제·개정안 관련 “의안원문” 파일 첨부



⑥ [저장] 클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국회예산정책처로 송부)



⑦ 국회예산정책처 접수 및 담당자 배정

② 법안 비용추계 결과 수신

- 국회의원은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회답한 비용추계 결과 수신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비용추계 결과 수신 절차〉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HOME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Q&A

의사일정 열람

2021년 7월

입법지원담당조직원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자료검색 및 대출신청

"열린 생각 함께하는 국회"

입법과 관련된 정보를 국회 각 소속기관으로 요구합니다. **입법정보요구**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자원을 국회사무처 법제실로 요구합니다. **법률안입안요구**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합니다. **① 의안비용추계요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 및 계류중인 법률 정보입니다. **위헌결정법률**, **심판계류법률**

의안 발의

입안지원시스템

법률안 발의·찬성 서명 요청

국회, 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정보시스템

맞춤입법콘텐츠 검색, 국회법률정보, 예산정보, 의안정보, 인터넷의사중계, 회의록, 국감정보, 영상회의록, 미디어자료관, 의정자료전자유동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COPYRIGHT © 대한민국국회. ALL RIGHT RESERVED.

시스템 문의 : 02-6778-3881, 3882

① [의안비용추계요구] 클릭

국회의원
홍길등의원실

- 의안비용추계요구
- 출차요요구
- 접수
- 진행중
- 답변완료** ②
- 기타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SEARCH

- 검색어: 제목
- 날짜검색: 요구일 ~
- 진행상태: 선택하세요

검색 초기화

▶ 해당 출력 건수 10

총 조회건수: 122건

번호	제목	이름	회신기한	등록일	상태
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6	2019-10-31	답변완료
	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만종덕		2019-11-13	답변완료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6	2019-10-31	답변완료
	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종덕		2019-11-13	답변완료
3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19-08-02	2019-07-31	답변완료
	재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경준		2019-08-01	답변완료

② [답변완료]함 클릭



③ 비용추계 결과를 수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re “법안명”] 클릭

③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

■ 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는 경우

- 답변받은 비용추계서를 다운로드 후 USB 등에 저장하여 출력물과 함께 의안과(본관 701호, 내선 2359)에 직접 제출하거나 의안과 메일 (bill@na.go.kr)로 송부

■ 법안을 전자로 발의하는 경우

-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법안을 발의할 때 답변받은 비용추계서 파일을 같이 첨부

※ 의안 발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의안과가 작성한 파일 참조

- 국회전자문서시스템 - 전자게시판 - 자료실 - 정보마당 - 알기 쉬운 의안발의 안내

[유형 2] 비용추계 회답 전 법안 발의 시 상세 절차



11)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는 법안 제출 시 첨부하거나, 의안과(본관 701호, 내선 2359)에 직접 제출 또는 메일(bill@na.go.kr)로 송부

① 법안 비용추계 요구

- 국회의원은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할 수 있음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 1) 내부망 컴퓨터에서 <https://nals.assembly.go.kr> 접속
- 2)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¹²⁾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은 국회의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법정보서비스 기관

- 국회사무처 법제실
- 국회도서관
- 입법관련기관(부서 아이디/비밀번호 사용)에서도 사용 가능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아이디

비밀번호

☐ 아이디저장
[개인 식별번호 찾기]

로그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COPYRIGHT© 대한민국국회. ALL RIGHT RESERVED.

12) 아이디 및 비밀번호 문의: 국회사무처 디지털정책담당관실(내선 3882)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비용추계 요구 절차〉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HOME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Q&A

의사일정 캘린더

2021년 7월

입법정보요구

입법안입안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위헌결정법률심판계류법률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COPYRIGHT © 대한민국국회, ALL RIGHT RESERVED.

시스템 문의 : 02-6778-3981, 3982

① [의안비용추계요구] 클릭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입법정보요구 / 법률안입안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 위헌관련법률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검색어: 제목

날짜검색: 요구일 ~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검색

초기화

쪽당 출력 건수: 10

총 조회 건수: 0건

번호	제목	이름	회신기관	등록일	상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②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클릭

의안비용추계요구

종자료요구 0건

접수 0건

진행중 0건

답변완료 0건

기타 0건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의안비용추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요구일	2020-05-04	요구위원회/의원	
소속		보좌직원	선택
메일 *		전화 *	
FAX		휴대전화 *	
		요구유형	온라인
소관위원회 *	선택하세요	회답방법 *	온라인(메일)
의안명 *	☐ 내용 복사		
제안취지 *			
의안원문	찾아보기...		
특기사항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 : 필수입력 항목

⑥

저장

목록

③ “의안명” 기입(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④ 제·개정안 “제안취지” 작성



⑤ 제·개정안 관련 “의안원문” 파일 첨부



⑥ [저장] 클릭(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국회예산정책처로 송부)



⑦ 국회예산정책처 접수 및 담당자 배정

②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출력

-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는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출력 가능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보기 화면〉

HOME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Q&A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입법정보요구 / 법률안입안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 위헌관련법률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국회의원 홍길동의원실

의안비용추계요구

송자료요구 0건

접수 0건

진행중 0건

답변완료 0건

기타 0건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상세보기

요구일시		보좌직원	
요구위원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
회답방법	온라인(메일)	진행상태	접수
메일		전화	
FAX		휴대전화	
등록자		소관위원회	
		요구유형	온라인
관련의원실	국회의원 의원실		
의안명			
제안취지			
의안원문			
특기사항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①

철회 | 이력보기 | **요구서보기** | 목록

① [요구서보기] 클릭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출력 화면〉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수신 : 국회예산정책처장

1. 의안

① 의안명 :

② 주요내용

③ 의안원문 : 첨부

2. 회답기한: 년 월 일

3. 요구 의원실 담당자 성명: (내선번호:)

20 년 월 일

요구 의원 :

등록 확인필	000000000000
-----------	--------------

② [다른 이름으로 저장] / ③ [미리보기] / ④ [인쇄] 중 필요한 기능을 클릭

※ 등록확인필: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추계요구 시
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기재됨

③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를 첨부하여 법안 발의

■ 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는 경우

-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를 다운로드 후 USB 등에 저장하여 출력물과 함께 의안과(본관 701호, 내선 2359)에 직접 제출하거나 의안과 메일 (bill@na.go.kr)로 송부

■ 법안을 전자로 발의하는 경우

-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법안을 발의할 때 다운로드 받은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파일을 같이 첨부

※ 의안 발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의안과가 작성한 파일 참조

- 국회전자문서시스템 - 전자게시판 - 자료실 - 정보마당 - 알기 쉬운 의안발의 안내

④ 법안 비용추계 결과 수신

- 국회의원은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회답한 비용추계 결과 수신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비용추계 결과 수신 절차〉



① [의안비용추계요구] 클릭

요구자 ▼
 HOME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Q&A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입법정보요구
법률안입안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위원관련법률

국회의원
홍길동의원실

의안비용추계요구

출차요요구

접수

진행중

답변완료
2

기타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 검색어 제목

• 날짜검색 요구일 ~

• 진행상태 선택하세요

검색
초기화

▶ 해당 출력 건수 10
총 조회건수: 122건

번호	제목	이름	회신기한	등록일	상태
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6	2019-10-31	답변완료
	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만종덕		2019-11-13	답변완료
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6	2019-10-31	답변완료
	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종덕		2019-11-13	답변완료
3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19-08-02	2019-07-31	답변완료
	재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경준		2019-08-01	답변완료

② [답변완료]함 클릭

↓

③ 비용추계 결과를 수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re “법안명”] 클릭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

21

3 비용추계 유형별 분류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이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1호·2호·3호)',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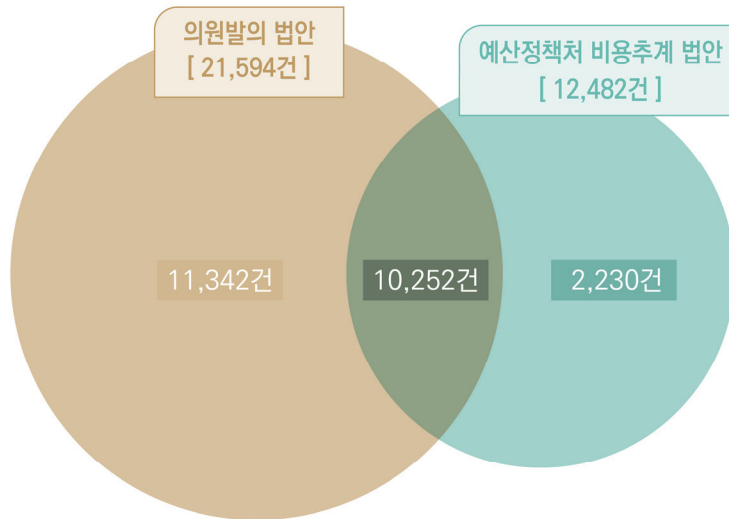
〈비용추계 유형별 분류〉

구 분		내 용
비용추계서		•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증감액에 대한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호	• 소요비용이 적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호	•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호	•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미대상사유서		• 법안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변화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증가하지만 증가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¹³⁾ 등

※ 미첨부사유서와 미대상사유서의 구체적인 차이는 37쪽 참조

13) '세입이 증가'되는 법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증가되는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임. 다만, 세율 변화 및 공제감면 변경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는 법안의 경우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감소' 외에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가 가능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증가규모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미대상사유서를 작성하고 있음

■ 20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과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법안



■ 20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중 예산정책처 추계유형별 건수

구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미대상사유서	합계
추계 건수	2,982건 (29.1%)	3,651건 (35.6%)	3,619건 (35.3%)	10,252건

■ 법안 비용추계 회답 건수

(단위: 건, 2021.07.19.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반기
비용추계서	931	929	751	926	638
미첨부사유서	1,264	990	1,019	1,919	831
미대상사유서	1,212	1,260	1,009	1,800	1,240
합 계	3,407	3,179	2,779	4,645	2,709

※ 미첨부사유서와 미대상사유서의 구체적인 차이는 36쪽 참조

■ 법안 비용추계 연도별 평균 회답기간

(단위: 일, 2021.07.19.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반기
회답기간	11.6	12.3	9.8	11.6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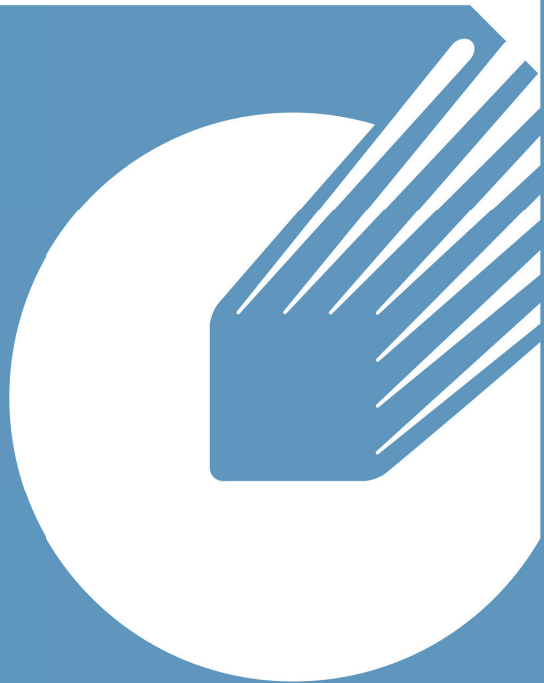
※ 2021년 7월 19일 작성된 자료로 2021년 평균 회답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법안 비용추계 이해

부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안 비용추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발의 법안에 대한 향후 재정수입 변화와 지출소요 등을 점검함으로써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 비용추계 도입 이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Q2

모든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추계 적용 예외 의안〉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법안

예산안

재정상 조치와 무관한 선출안,
징계안, 자격심사안 등

Q3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국회 예산정책처만 할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원실에서 직접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국회법」이 개정(2015년 시행)되어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가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만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2015. 3. 19. 시행)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u>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A: 「국가재정법」 제87조¹⁴⁾에 따라 **정부가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¹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4)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15)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Q5**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비용추계서 등을
회답받기 전에 법안을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긴급하게 법안을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내역인 「의안비용추계 요구서」¹⁶⁾를 첨부하여 법안을 먼저 발의할 수
있습니다.

※ 국회법 개정 전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전까지 국회예산
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정(2021. 10. 28. 시행) 후에는 위원회 심사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
및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의안비용추계 요구서 출력방법: 17쪽 참조

Q6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를 첨부하여 법안을 먼저 발의한 경우 추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를 의안과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A: 개정(2021. 10. 28. 시행)된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¹⁷⁾에 따르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원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 전에는 의원이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법안을 먼저 발의한 경우 추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음

-
- 17)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Q7

위원회의 수정안, 위원회안 또는 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가 필요한가요?

A: 「국회법」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2항¹⁸⁾에 따라 위원회에서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하거나, 위원회안 또는 대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재정소요 등을 본회의에서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8)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②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Q8

비용추계를 회답받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나요?

A: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뢰된 비용추계의 접수 순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회답 처리하고 있으며, **회답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균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행정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계에 필요한 자료 회답이 늦어지거나 비용추계 요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비용추계 회답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 평균 회답 기간〉

(단위: 일)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회답기간	12.6	11.6	12.3	9.8	11.6	11.6

※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임

Q9

미첨부사유서와 미대상사유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미첨부사유서’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수반되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하지만 변화되는 재정규모가 적은 경우** 또는 유사사례 등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작성하는 사유서입니다.

‘미대상사유서’는 법안의 내용상 재정부담 주체가 민간이거나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규모 변화가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및 미대상사유서 구분〉

구분		내용
미첨부 사유서 ¹⁾	1호	• 소요비용이 적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호	•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호	•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등
미대상사유서		•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변화가 없는 경우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증가하지만 증가규모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¹⁹⁾

주¹⁾ 미첨부사유서의 종류별 구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9) ‘세입이 증가’되는 법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증가되는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임. 다만, 세율 변화 및 공제감면 변경 등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는 법안의 경우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의 ‘감소’ 외에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추계가 가능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증가규모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미대상사유서를 작성하고 있음

Q10

의뢰한 법안 비용추계를 사정상 철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비용추계요구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담당자가 지정되기 전에는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화면 하단의 '철회' 버튼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기관소개] > [의안비용추계/조사분석 안내]에서 「의안비용추계 요구철회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팩스(02-6788-3742) 송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의안비용추계 요구철회서」에는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의 직인을 찍어야 하므로 이메일로는 송부할 수 없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접수 전 철회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비용추계 철회 화면〉

HOME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Q&A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입법정보요구 / 법률안입안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 위원관련법률

국회의원
홍길등의원실

의안비용추계요구

종자료요구 0건
접수 0건
진행중 0건
답변완료 0건
기타 0건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의안비용추계요구 상세보기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요구일시	보좌직원	
요구위원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
회답방법	온라인(메일)	진행상태 접수
메일	전화	
FAX	휴대전화	
등록자	소관위원회	
	요구유형	온라인
관련의원실	국회의원 의원실	
의안명		
제안취지		
의안원문		
특기사항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철회 | 이력보기 | 요구서보기 | 목록

※ [철회] 버튼 클릭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접수 후 철회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통한 의안비용추계 요구철회서 다운로드 화면〉

국회예산정책처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①

기관소개

②

의안비용추계/조사분석안내

관제법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오시는길

사분석 안내
및 조사분석 안내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및 분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2호, 제5호)

<요구 및 회답 절차>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

접수·분류
(기획관리관)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각 실국 소관 부서)

요구 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회답
(각 실국 소관 부서)

<상세 절차>

01 비용추계 및 조사·분석요구서 작성
(위원회 또는 의원)

· 오프라인: 요구서식 작성후 FAX로 제출
· 온라인: 국회통합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요구서식 다운로드

02 접수 및 분류
(정책총괄담당관)

· 담당전화번호: 02-788-4665
· 접수 FAX번호: 02-788-3742

③

조사분석요구서 ↓ 의안비용추계요구서 ↓
조사분석철회서 ↓ 의안비용추계철회서 ↓

①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s://www.nabo.go.kr>) 접속

② [기관소개] - [의안비용추계/조사분석안내] 클릭

③ [의안비용추계철회서] 버튼 클릭 후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④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팩스(6788-3742) 송부

의안비용추계 요구철회서

수 신 : 국회예산정책처장

참 조 : 기획관리관

제 목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요구한 의안비용추계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요구 위원회 · 의원 : (인)

등록인	(국회예산정책처 담당자 서명)
확인필	

※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등록인장을, 위원회인 경우 직인을 날인바랍니다.

A: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²⁰⁾에 따라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12**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비용추계서 내용이 반영
되나요?**

A: 비용추계서는 법안심사 시 재정소요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게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일부 비용추계 결과는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당시와 법안 통과 당시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로 재정소요 추계에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정부가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Q13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는 어디서 참고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안정보시스템²¹⁾에서 법안을 검색하면 재정수반 법안에 한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화면〉

▶ [20235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23530	2019-10-31	조정석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0대 (2016~2020) 제371회

2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 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Q14

법안 비용추계는 법안의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도 고려하나요?

A: 법안 비용추계는 법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만을 추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비용추계에서는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Q15**법인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분석관은
몇 명인가요?**

A: 비용추계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 인원은 정원 29명, 현원 27명입니다.

이 중, 지출법인 관련 비용추계는 경제비용추계과, 사회비용추계과, 행정비용추계과에서 수행하고, 조세법인 관련 비용추계는 세제분석1과, 세제분석2과에서 수행합니다.

과별 분석관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추계 담당 분석관 과별 인원〉

(단위: 일, 2021.07.19. 기준)

구분	정원	현원
추계세제총괄과	5	3
경제비용추계과	5	5
사회비용추계과	5	5
행정비용추계과	5	5
세제분석1과	5	4
세제분석2과	4	5
합 계	29	27

※ 위 과별 분석관은 비용추계 업무 이외에도 의원이 요구한 조사분석, 총수입 예산안·결산 분석, 조세정책·조세행정 연구분석, 중·장기 재정전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16

비용추계를 요구했는데 담당 분석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비용추계를 담당하는 분석관은 비용추계요구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되어 담당자가 지정된 후에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비용추계 담당분석관 확인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Assembly Comprehensive Legislation Support System.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HOME,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공지사항, and Q&A.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The main title of the system.
- 의사일정**: A calendar showing the legislative agenda for 2021, with dates 1 through 31.
- 입법지원시스템**: A section for legislative support, including buttons for 입법정보요구 (Request for Legislative Information), 법률안입안요구 (Request for Bill Introduction), and 위헌결정법률심판계류법률 (Request for Constitutional Review).
- 국회예산정책처**: A s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Policy Committee, including buttons for 예산정보 (Budget Information), 예산안정보 (Budget Bill Information), 예산안심의 (Budget Bill Review), and 예산안제출 (Budget Bill Submission).
- 국회입법지원시스템**: A s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Support System, including buttons for 입법정보 (Legislative Information), 입법안정보 (Legislative Bill Information), 입법안심의 (Legislative Bill Review), and 입법안제출 (Legislative Bill Submission).

The **입안비용추계요구**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1', indicating the step to click for requesting cost estimation.

① [의안비용추계요구] 클릭

의안비용추계요구

총자료요구 1건

접수 1건

진행중 0건

답변완료 0건

기타 0건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검색어: 제목
날짜검색: 요구일 ~
진행상태: 선택하세요

SEARCH

검색 초기화

1) 쪽당 출력 건수 10 총 조회건수: 1건

번호	제목	이름	회신기한	등록일	상태
1	(의원명)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8-31	2021-08-09	접수

② 비용추계를 요구한 해당 법안명 클릭

가확조작성
입법정보화담당관실

의안비용추계요구

총자료요구 1건

접수 0건

진행중 1건

답변완료 0건

기타 0건

의안비용추계요구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등록](#)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ome > 의안비용추계요구 > 의안비용추계요구 검색

의안비용추계요구 상세보기

요구일시	2021-08-09 14:31:44	보좌직원	
요구위원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
회답방법	온라인(메일)	진행상태	진행중
메일		전화	1234
FAX		휴대전화	010-0000-0000
등록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답기한	2021-08-31	요구유형	온라인
의안명	(의원명)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처지			
의안원문	(의원명)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특기사항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합니다.		

분리질의제목

분리질의내용

분리질의비고

답변자/소속

홍길동/비용추계]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내선)4664

이력보기 | 요구서보기 | 목록

③ 화면 하단의 [답변자/소속]의 비용추계 담당 분석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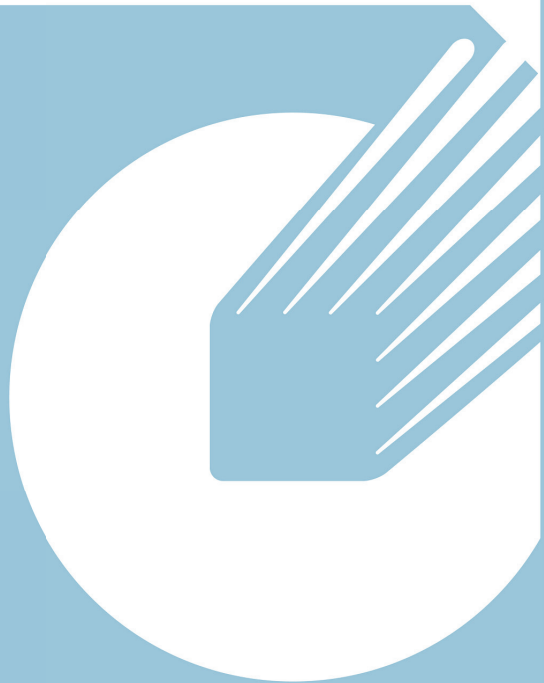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법안 비용추계 이해

참고자료

비용추계 관련 법령



국회법

(비용추계 관련 조문)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7.27.>²²⁾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2) 시행 2021. 10. 28.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회법」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국가재정법」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하위 법령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 값의 표시 등 비용추계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2호,2015.7.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규칙 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2.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 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 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771호,2015.5.2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예 시〉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구 분	지출						
	○						
	소 계(a)						
수입	○						
	○						
	소 계(b)						
총 비용(a-b)							

II. 재정수반요인

III. 비용추계의 전제

IV.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V. 부대의견

VI. 작성자

〈예 시〉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 장 0 0 0
추계세제분석관 0 0 0(6788-0000, 000@assembly.go.kr)

○○○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예 시>

연 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 중앙정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I

(법안 비용추계 이해)

발간일 2021년 8월 2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78)

ISBN 978-89-6073-427-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2-001784-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